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특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xceptional Clause of Educational Financing in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김 동 욱* · 문 호 남**

(Kim, Dong-Wuk · Moon, Ho-Nam)

목 차

- I. 서 론
- II. 제주 교육재정 현황
- III. 제주 교육재정 특례
- IV. 개선방안
- V. 결론

I. 서론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함으로써 단층제인 광역자치단체체제로 개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문에서도 차별화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의 특례와 일반회계전입금 비율 특례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타시도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 시간강사

제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2008. 6. 4. 조례 제368호)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는 일반 도 단위와 같은 수준의 1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기초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액을 감안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 전입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제주의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제주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 합치는 과거 도시군 체제 시의 보통교부금 교부율만을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으로 미래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재정보전책을 차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법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및 관련 조례에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인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에 대한 운용실태 및 진단을 통하여 법정교부비율의 적정성과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재정 특례규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제주 교육재정 현황

2.1 재원별 세입규모

2012년 기준 제주의 유치원생 수는 5천명, 초등학생 수는 4만 명, 중학생 수는 2만 4천명, 고등학생 수는 2만 4천명으로 전체 학생 수는 약 9만 3천명이다. 2012년 기준 제주의 유치원 교원 수는 4백 명, 초등학교 교원 수는 2천5백 명, 중학교 교원 수는 1천 4백 명, 고등학교 교원 수는 1천 4백 명으로 전체 교원 수는 5천 7백 명이다. <표 1>과 <표 2>에 제주도교육청 총괄, 연도별·재원별 세입규모가 요약되었는데, 2013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은 7,722억원으로 2012년 회계연도 대비 6.3% 증가하였다. 2013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80.6%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교육이전수입은 15.9% 수준이다. 중앙정부이전 수입은 '12년 대비 6.6%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13년 재원별 세입규모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전국평균 76.1%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중 '13년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이전수입은 '12년 보다 5.3%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15.9% 수준으로 '12년 보다 다소 낮아졌고, 전국평균 16.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비중은 3.5% 수준으로 전국평균 5.3% 보다 낮은 수준으로, 2008년 기준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35.0%로 매우 급속히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채는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기간 6년 동안(2008-2013)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결산기준으로 지방교육채 33,467,020천원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을 제외하고 주민(기관)부담금 등 기타 세입은 없었다.

중앙정부가전수입은 2008년도에 82.5%로 최고로 높은 비중이었으나, 2010년도(75.1%)를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80%수준으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자체 이전수입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세입예산 총괄별(관별)

(천원, %)

재원별	'13회계연도(A)		'12회계연도(B)		증감액(A-B)	
	구성비		구성비		증가 비율	
합계	772,171,555		726,559,361		71,217,656	6.3%
중앙정부가전수입	622,438,373	80.6%	584,132,505	80.4%	38,305,868	6.6%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	621,355,431	80.5%	583,088,001	80.3%	38,267,430	6.6%
국고보조금	1,082,942	0.1%	1,044,504	0.1%	38,438	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2,979,829	15.9%	116,821,394	16.1%	6,158,435	5.3%
지방교육세전입금	81,064,618	10.5%	76,974,240	10.6%	4,090,378	5.3%
담배소비세전입금	-		-			
시도세전입금	19,411,354	2.5%	19,411,354	2.7%	0	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32,000	0.3%	4,638,000	0.6%	-2,406,000	-51.9%
비법정이전수입	20,271,857	2.6%	15,797,800	2.2%	4,474,057	28.3%
지자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26,753,353	3.5%	25,605,462	3.5%	26,753,353	4.5%
교수·학습활동수입	8,939,109	1.2%	9,486,566	1.3%	-547,457	-5.8%
행정활동수입	102,100	0.0%	107,150	0.0%	-5,050	-4.7%
자산수입	122,144	0.0%	261,746	0.0%	-139,602	-53.3%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잡수입 등	390,000	0.1%	150,000	0.0%	240,000	160.0%
이월금 등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지방교육채	-		-			
주민(기관)부담금 등 기타	-		-			

<표 2> 연도별·재원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세입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재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전국(억원)	연평균 증가율
	중앙정부 이전수입	463,568 82.5%	492,975 80.5%	461,062 75.1%	556,223 81.7%	584,133 80.4%	622,438 80.6%	388,346 76.12%
지자체 이전수입	86,260 15.3%	92,737 15.1%	98,650 16.1%	98,838 14.5%	116,821 16.1%	122,980 15.9%	86,132 16.88%	
지자체 교육비	12,096	27,004	54,103	25,823	25,605	26,753	26,830	35.0%
특별회계부담수입	2.2%	4.4%	8.8%	3.8%	3.5%	3.5%	5.26%	
지방교육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865 1.74%	-
주민(기관)부담금 등 기타	5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합계	561,974	612,716	613,815	680,885	726,559	772,172	510,173	6.6%

* :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기간 6년 동안(2008-2013)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결산기준으로 지방교육채 33,467,020천원 발행하였음

2.2 성질별 세출규모

인건비는 2008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성질별 세출규모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년간 평균 63.7%로 가장 높고, 인건비 비중은 2008년 68.3%에서 2012년 61.3%로 타 교육청과 비슷하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3> 연도별 제주교육청 성질별·부문별 세출규모

(단위: 백만 원)

연도 세출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383,631 68.3%	396,352 64.7%	396,320 64.6%	412,588 60.6%	445,433 61.3%
물건비		24,130 4.3%	24,746 4.0%	25,315 4.1%	26,347 3.9%	28,891 4.0%
	이전지출	4,325 0.8%	5,006 0.8%	14,418 2.3%	8,608 1.3%	16,917 2.3%
자산취득		71,149 12.7%	78,508 12.8%	71,826 11.7%	96,372 14.2%	82,946 11.4%

상환지출	4,120	0	752	1,623	996	-29.9%
	0.7%	0.0%	0.1%	0.2%	0.1%	
학교지원	69,231	80,915	100,983	131,863	147,720	20.9%
	12.3%	13.2%	16.5%	19.4%	20.3%	
에비비 및 기타	5,388	27,189	4,201	3,484	3,656	-9.2%
	1.0%	4.4%	0.7%	0.5%	0.5%	
합계	561,974	612,716	613,815	680,885	726,559	6.6%

성질별 세출규모 중에서 물건비는 2008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 1.8%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전 지출 세출은 4년간 연평균 4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세출비중도 2008년 0.8%에서 2013년 2.3%로 증가추세이다. 자산지출 세출은 2008년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산취득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2012년 4년간에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다. 학교지원 세출은 2008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20.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지원 세출비중은 2008년 12.3%에서 2012년에는 20.3%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에비비 및 기타의 세출은 연평균 9.2%로 감소하였다.

2.3 부문별 세출규모

유아 및 초중등학교교육은 2008년 기준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6.8% 증가하였다. 평생직업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9.8%로 증가했으며 전체 세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없다. 교육일반은 2008년을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 3.4%로 증가하였다.

<표4> 연도별 제주교육청 성질별 · 부문별 세출규모

(단위: 백만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08-'12증가율
부 문 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6,160	565,693	585,504	649,310	696,599	6.8%
	평생직업교육	1,534	1,962	1,805	2,132	2,228	
	교육일반	24,280	45,061	26,506	29,443	27,732	3.4%
		4.3%	7.4%	4.3%	4.3%	3.8%	

2.4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전·후 제주도교육청 재정추이

<표 5>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재정은 국가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보다는 출범 후에 그 비중은 높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국가부담 비중은 81.88%로 국가부담이 절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3년 평균 교육비특별회계 제주의 부담비율은 17.51%이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간은 15.75%로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지자체 부담은 약 1.36%p가 낮아졌다. 자체수입 비중은 2% 내외로 매우 미미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에 약 1.08%p가 낮아졌으나 최근 2012년, 201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보다 2%p가 높아졌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인 국가부담금은 크게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6년에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통교부금의 1.533%인 4,568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에는 총액의 10,000분의 157로 교부 받고 있다. <표 6>에 나타나듯이 보통교부금은 꾸준히 늘고 있고, 2013년 현재 보통교부금은 6,2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5> 제주자치도 전·후 제주도교육청 재정추이 비교

(본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국가부담	지자체부담	자체수입*	합계(100%)
특별자치 도설치 이전	2004	306,615(77.51%)	76,573(19.36%)	12,393(3.13%)	395,583
	2005	332,675(78.89%)	72,601(17.15%)	13,025(3.08%)	418,301
	2006	368,157(80.59%)	73,192(16.02%)	13,405(2.93%)	454,754
	평균	79.00%	17.51%	3.05%	
특별자치 도설치 이후	2007	409,321(82.40%)	75,080(15.11%)	11,311(2.28%)	495,754
	2008	463,567(82.49%)	86,260(15.35%)	11,096(1.97%)	560,923
	2009	492,974(80.46%)	92,737(15.14%)	12,004(1.96%)	597,715
	2010	461,062(80.49%)	98,650(17.22%)	13,103(2.29%)	572,815
	2011	556,223(83.18%)	98,838(14.78%)	13,613(2.04%)	668,674
	2012	584,133(81.91%)	116,821(16.38%)	12,205(1.71%)	713,159
	2013	622,438(82.21%)	122,980(16.24%)	11,753(1.55%)	757,171
	평균	81.88%	15.75%	1.97%	

* : 자체수입은 이월금 제외

자료: 백혜선의 4인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재판집

<표 6> 연도별 제주의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국고보조금)

(단위 : 백만원)

연도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합계
2006	365,027	3,130	368,157
2007	403,992	5,329	409,321
2008	463,516	52	463,568
2009	492,891	84	492,975
2010	460,629	367	460,996
2011	555,230	702	555,932
2012	583,000	1,045	584,045
2013	621,355	1,083	622,438

<표 7> 연도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총계
		증가율		증가율	
2005	6,340		59,844		66,184
2006	6,548	3.3%	64,868	8.4%	71,416
2007	11,889	81.6%	63,352	-2.3%	75,241
2008	12,490	5.1%	68,111	7.5%	80,601
2009	13,472	7.9%	70,099	2.9%	83,571
2010	13,878	3.0%	71,678	2.3%	85,556
2011	15,405	11.0%	71,873	0.3%	87,278
2012	19,411	26.0%	76,974	7.1%	96,385
2013	19,411*	0.0%	81,065	5.3%	100,476

* : 2013년 본예산은 보수적으로 2012년 수준의 도세전입금으로 편성

제주도가 부담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세법’ 제26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포함한다. <표 7>을 보면, 특히 리스자동차 취득등록세입 증가로 2011년, 2012년, 2013년 도세 세입 증가율은 크게 나타났다. 정부이전수입의 증가율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증가율은 낮으며 제주특별자치 출범이후 비법정전입금은 급증하였다.

<표 8> 연도별 비법정전입금 전입실적

(단위 : 천원)

연도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국고지원지원금	총계
2008	5,465,000	195,000	5,660,000
2009	7,117,394	49,200	7,166,594
2010	7,962,394	0	7,962,394
2011	11,559,800	0	11,559,800
2012	15,797,800	0	15,797,800
2013	20,271,857	0	20,271,857

Ⅲ.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특례

3.1 보통교부금 법정률화

3.1.1 보통교부금 개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적 근거 하에, 국가의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20.27%와 지방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고 보통교부금은 96%, 특별교부금은 4%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직원 인건비 지급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반면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한 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차액을 배분한다.

3.1.2 보통교부금 산정방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항목 및 측정단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예상액으로 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교부한다.

기준재정수요액 (7개측정항목·±자체노력)	기준재정수입액 (지방세+세의 수입액 ±자체노력)	= 재정부족액 =	보통교부금
		↑ (조정률 적용)	

또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표 9> 수요 항목별 사용통계 현황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인건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증원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수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라.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수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학교 수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학교 수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경비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5.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신설·이전·증설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다. 교과교실 시설비	증설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지원	건축연면적
	사.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나.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라.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사업지원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다. 초동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8. 재정 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3.1.3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내역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보면 교직원인건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유아교육사업비의 비중은 2010년 2.1%에서 2012년 4.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인 방과후 사업비 예산도 2011년 및 2012년에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 비중 및 증가율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기준재정수요총계	410,462	100.0%	424,609	100.0%	3.45%	451,103	100.0%	6.24%
1. 교직원인건비	275,751	67.2%	284,365	67.0%	3.12%	293,457	65.1%	3.20%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63,010	15.4%	68,343	16.1%	8.46%	72,992	16.2%	6.80%
3. 교육행정비	36,724	8.9%	25,102	5.9%	-31.65%	22,175	4.9%	-11.66%
4. 학교시설비	17,139	4.2%	18,420	4.3%	7.47%	17,227	3.8%	-6.48%
5. 유아교육사업비	8,592	2.1%	10,481	2.5%	21.99%	20,608	4.6%	96.62%
6. 방과후학교사업비	3,069	0.7%	4,219	1.0%	37.47%	6,248	1.4%	48.09%
7. 재정결합보전	4,397	1.1%	8,045	1.9%	82.97%	6,804	1.5%	-15.43%
자체노력수요 등	1,780	0.4%	5,634	1.3%	216.52%	11,133	2.5%	105.2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각 연도

<표 11> 보통교부세 산정항목별 증가율
(단위: %)

		2010	2011	2012
기 준 재 정 수 요	교직원인건비	2.39	3.12	3.20
	학교교육과정운영비	21.33	8.46	6.80
	교육행정비	-17.64	-31.65	-11.66
	학교시설비	-36.11	7.47	-6.48
	유아교육사업비	29.11	21.99	96.62
	방과후학교사업비	21.74	37.47	48.09
	재정결합보전	-40.82	82.97	-15.43
	자체노력수요	9.47	216.52	105.27
	소계	-0.11	3.45	6.24
기준재정수요		2.97	-13.57	-4.10
보통교부금총액(제주도포함)		-1.04	9.21	8.9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각 연도

3.1.4 제주 보통교부금 관련 법령 및 법정률화 한계

2006년도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일반자치 보통교부세는 총교부세총액의 3%로 법정률화 하였고, 제주도의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율은 제주자치도 직전(2006년)의

교부율 1.566%를 반영하고, 원어민교사 확대 등 향후 제주자치도로서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보통교부금 법정률이 10,000분의 157로 조정되었다. 보통교부금 비율의 1.57%를 법정률화 한 것은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될 수 있으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교육사업의 신규재원조달에는 한계를 보인다.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보통교부금 교부율 산정자료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총액	13,843,148	15,326,846	16,171,600	22,946,340	23,273,261	
제주도	200,980	230,692	243,084	345,251	364,502	
비율	1.451	1.505	1.503	1.505	1.566	

보통교부금 제도는 재정력이 약하면 보통교부금을 증가시켜 재정을 보전해주고, 재정력이 좋으면 보통교부금이 감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격차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제주의 보통교부금은 교부비율을 총액의 1.57%로 고정하여 법정화 함으로써 제주자치도나 교육청의 자체수입이 늘어 재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을 감소하지 않는 법정률화 제도가 유리하고, 반대로 자체수입이 감소 혹은 정채하여 재정력이 감소하면 보통교부금이 증가하는 경우 불리한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주의 1.57% 법정률화 제도는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어서 보통교부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교부금 1.57%세 법정률 합의는 과거 도시·군 체제시 보통교부금 전체 교부율만을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으로, 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재정보전책을 차단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의 법정률 고착화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신규재원조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들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들이 늘어나고,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타 지방에 별도의 측정항목으로 교부하는 예산까지도 총액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으로 총교부액의 1.57%만 교부받을 수 있는 경직된 재정특례로 부여함으로써 이는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총액의 25%를 추가로 5년간 교부하는 재정특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표 13> 보통교부금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재정 특례)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3.23>

3.1.5 제주교육청 교부금 현황

(1) 보통교부금 현황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는 제주의 교육재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추가 재원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주의 보통교부금 배분액은 결산기준으로 2010년에는 전체 보통교부금의 1.629%, 2011년은 1.627%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의 제주의 1.57% 법정 배분율보다 높은 편이다. 국제학교 설립 등 특별한 경우에 별도로 추가 교부하고 있다.

<표 14> 연도별 교육인적자원부 보통교부금 교부율 산정자료(결산기준)
(백만원, %)

구분	전체			제주			
	보통교부금	양여금	계	보통교부금	양여금	계	비율
2012				594,336			
2011	34,878,223		34,878,223	567,798		567,798	1.627
2010	31,291,036		31,291,036	509,713		509,713	1.629
2009	29,495,414		29,495,414	463,018		463,018	1.570
2008	32,038,928		32,038,928	503,014		503,014	1.570
2007	25,304,772		25,304,772	408,003		408,003	1.612
2006	23,772,906		23,772,906	353,784		353,784	1.535
2005	22,946,341		22,946,341	345,251		345,251	1.488
2004	18,402,780	4,238,600	22,641,380	289,270	48,409	320,279	1.41
2003	17,038,820	4,091,008	21,129,828	250,469	46,590	297,059	1.41
2002	15,241,266	3,672,632	18,913,898	216,915	41,731	258,646	1.37

(2) 특별교부금 현황

특별교부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정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전국 특별교부금 총 배분액 중, 제주의 비중은 4년간(2008~2011) 평균이 2.30%로 보통교부금 법정률 1.57%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시지역의 경우 대전이고, 도지역은 경북이 높으나 제주는 예산대비 특별교부금의 누적액(2010~2012)은 274억원을 받았다.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은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표 15> 연도별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교부율 산정자료(결산기준)
(백만원, %)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전국	1,184,499	1,078,457	1,146,161	1,260,756	
제주	26,021	23,602	28,602	28,640	
비중	2.2%	2.2%	2.5%	2.3%	2.30%

<표 16> 2010~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배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합계
시 지 역	서울	3,890,550	1,600,000	3,503,590	8,994,140
	부산	10,560,065	6,500,000	8,603,594	25,663,659
	대구	6,113,722	9,500,000	12,503,590	28,117,312
	인천	4,557,502	9,500,000	12,503,590	26,561,092
	광주	8,003,418	6,500,000	3,503,590	18,007,008
	대전	9,893,114	12,000,000	12,503,590	34,396,704
	울산	5,335,612	6,500,000	8,603,594	20,439,206
도 지 역	경기	3,890,550	1,600,000	3,703,590	9,194,140
	강원	6,113,722	4,500,000	3,703,590	14,317,312
	충북	10,448,906	10,500,000	12,703,590	33,652,496
	충남	8,670,369	13,000,000	12,703,590	34,373,959
	전북	4,446,343	1,600,000	3,703,590	9,749,933
	전남	5,002,136	7,500,000	3,703,590	16,205,726
	경북	10,893,540	13,000,000	12,703,590	36,597,130
	경남	6,113,722	7,500,000	9,003,596	22,617,318
	제주	7,225,308	7,500,000	12,703,590	27,428,898
계	111,158,579	118,800,000	136,357,454	366,316,033	

3.2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3.2.1 제주특별자치도세

제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2008. 6. 4. 조례 제368호)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는 전국 도 단위와 같은 수준

의 1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을 제주자치도 출범하기전과 같이 3.6%로 정한 도조례로 인해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을 감안할 경우 법정전출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상 특별교육 재정수요를 감안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원 대폭 증원,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의 재원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의 조정은 필요하다.

물론 시·군세가 자치도세로 전환되어 자치도세가 증액되어 법정전입금이 증가하나, 현재 각 시·군에서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에 투입되던 경비보조가 없어지게 되어 실제 전입률은 낮아졌다.

3.2.2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광역시인 경우는 특별(광역)시세로 분류되고, 해당 교육청에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출하고, 도행정체제인 경우 시·군세로 분류되어 시·군에 유보되기 때문에 도로부터 해당교육청으로는 추가 전입이 없다. 제주자치도인 경우 2시, 2군 행정계층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 출범하면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기에 제주자치도는 타 도와 다른 행정체제로 인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되어야 한다. 2013년 제주자치도 담배소비세 세입 405억원을 도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연간 182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 가능하다.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비세 세입 추이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6,135	38,408	38,891	38,537	35,339	38,614	40,490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인한 추가 전입이 없기 때문에 시·도세전입금만이라도 최소한 광역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서 최소한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시·도세 전입금 38.9%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경기도는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18>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관련 법령

<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p>	<p>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p>	<p>제2조(전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 2008. 6. 4 조례 제368호></p>
<p>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p>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p>
<p>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p>	<p>제12조(개정 특례)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신설 2012.1.17></p>

IV. 개선방안

4.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정전출금 비율 상향 조정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요 감축 기대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수요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학교, 교원 수는 줄지 않았으며 교육재정 수요도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 내국세 및 지방세 증세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하거나 그 전입비율의 상향조정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2008. 6. 4. 조례 제368호)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는 일반 도 단위와 같은 수준의 1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기초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액을 감안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 전입금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자치와 협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전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세가 증액되어 법정전입금이 증가하나, 현재 각 시군에서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투입되던 경비보조가 없어지게 되어 실제 전입률은 낮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행정시에 예산권 부여 문제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시행했던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경비보조액을 행정시의 교육기관에 ‘교육재정보조금’ 형식의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법정 기타전출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재정들이 상당한데, 이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재정이 7~8%까지 지원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재정의 일부를 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 되고, 혹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자율성 및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복지공약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과 같은 임기응변적 재원으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도교육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비법정 전출금을 줄이고 법정 전출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상 특별교육재정수요를 감안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원 대폭 증원,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의 재원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 대한 재원규모가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중앙정부 간의 재원지원의 책임성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정전출금 비율 상향조정으로 안정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2시, 2군 행정체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 출범하면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전출이 전혀 없었다.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었던 재원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와 다른 행정체제로 인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제주도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인한 추가 전입이 없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도세 전입금만이라도 최소한 광역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서 최소한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시도세 전입금 38.9%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2 보통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

4.2.1 1.57% 법정률화의 보통교부금의 기능 상실

보통교부금은 재정력이 약하면 교부금이 증가하고 재정력이 좋으면 교부금이 감소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격차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법정률화 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의 지자체 전출금이나 자체수입이 늘어 제주도의 재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57% 법정률화 제도가 유리하고, 반대로 제주도의 전출금이나 자체수입이 감소 혹은 정체하여 재정력이 감소하면 보통교부금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57% 법정률화 제도가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어서 보통교부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은 종전에는 일정 수요산식에 의하여 불규칙적으로 교부 받아오던 재원을 교부총액의 1.57%로 법정률화 하여 국세의 증가에 연동되어 증가하는 총액할당 방식의 지원으로, 재정의 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후 환경 변화 및 미래 성장의 재원확보에는 역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2.2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지원에 대한 특례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설립비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지만,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구성에 들어가는 추가적 재정수요가 보통교부금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189조에는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한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주 재원 성격의 보통교부금 법정률 고착화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신규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내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원조달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감소되어도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의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실행함에 새로운 제주도의 기준재정수용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제주는 최근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출생률, 순전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제한되어 있어 변화된 제주의 교육복지정책 실행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제반경비와 급증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5년도 이후 20.27%에 머물러 있는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재 20.27%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2%로 축소하여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 합의는 과거 도시·군 체제시 보통교부금 교부율만을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으로 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재정보전책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세 교부 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배분 법정비율 1.57%에 대한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2절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등

제162조(외국어 교육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189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18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4.2.3 교육복지 완성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3세부터 5세의 어린이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법정률화로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실행함에 새로운 제주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부담

분이 확대되어, 2015년에는 교육청의 교특회계에서 100%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96%인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최근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출생률, 순전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제한되어 있어 변화된 제주의 교육복지 정책 실행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 실행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증가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보통교부금 총액이 되는 현행 내국세 교부율 20.17%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0월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17%에서 25.3%로 상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4.2.4 타 특별에 준한 특별법 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10. 1 시행)」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통합 전 수준을 유지, 통합 산정한 재정부족액이 통합 전 자치단체의 개별 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적용한 특별법 개정요구가 필요하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1호인 통합 창원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직전 연도 3개시 보통교부세액의 6%(146억원)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설치 후 5년 동안은 보통교부금 산정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으로 보통교부금이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재정특례를 두고 있다. 앞의 사례를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적용하는 특례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4.2.5 시군 폐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 제외

시군 폐지에 따른 각종 기초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가 제외되고, 정부사업 또는 시책지원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금 등에 대한 합리적 재원확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세가 급증하여 보통교부금 법정률 1.57%가 현실적으로는 불리하다고 단언 할 수는 없으나, 학교가 신설·확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재원 부

족이 예상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법정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안정적이고 적정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4.3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설립기금 내실화

4.3.1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977개교, 4조 2,640억 원이나, 2011년까지 시도 일반회계에서 실제 전입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조 3,554억 원으로 실제 부담분의 5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지역인 경우 서울시교육청(95.3%)의 전입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시(28.5%), 광주시교육청(29.3%)이 낮으며, 도지역인 경우 강원도교육청(60.1%)이 가장 높고, 경북도교육청(4.4%)이 가장 낮다. 제주도교육청의 2001년 이후 총액에 대한 전입 비율이 42.9%¹⁾로서 전국평균 55.2%, 도지역 평균 51.9%보다도 훨씬 낮다. 2006년 이전 기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매입 일반회계 부담금은 법적으로 받아내야 할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용지 비용을 충당해 왔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시개발지역 내 이미 신설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한 전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2012. 03)에서 미전출금 89억 3,000여만 원을 4년 균등 분할 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이후 한라초(2001년 개교)를 비롯해 한라중(2002년 개교), 백록초(2006년 개교) 3개교가 신설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9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해 22억 3,200만원씩 분할해 부담기로 하고, 첫해인 2013년에는 22억 3,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4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제주시 삼화지구내 초·중학교가 2015년에 신설됨에 따라 당장 2014년부터 2년간 7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이를 우

1) 2015년 설립예정인 가칭 삼화1초 및 가칭 삼화중을 제외한 금액임

선 완납한 후 차후에 편성해 지출하는 것이 도의 정책방향이다. 2014년 회계에 제주도는 삼화 초중학교 용지매입비로 1차분 45억 중 35억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23억여원으로 삭감 편성되었다.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에 대한 조속한 요구와 동시에 예산심의 과정에 상반된 관련예산 삭감은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의 증가는 교육청의 학생들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다른 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자치도는 2012년 이후 지방세입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들 중 가장 높고, 이에 따라 가용재원도 늘어가고, 비법정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의무적 부담금인 학교용지매입비 기존 미납금에 대한 분할 약속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는 신뢰성 있는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

<표 19>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현황(2001~2011)

(단위: 백만원, %)

시도명	매입비총액	시·도 일반회계 부담금		
		시·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A)	시·도 실제 전입금	
			전입액(B)	비율(B/A)
전 국	8,528,115	4,264,046	2,355,362	55.2
시 지역	2,688,272	1,344,122	842,266	62.7
서 울	947,234	473,602	451,512	95.3
부 산	272,263	136,132	65,522	48.1
대 구	279,222	139,611	39,825	28.5
인 천	545,624	272,813	157,251	57.6
광 주	311,882	155,941	45,761	29.3
대 전	241,866	120,933	50,635	41.9
울 산	90,181	45,090	31,760	70.4
도 지역	5,839,843	2,919,924	1,513,096	51.8
경 기	4,695,315	2,347,659	1,311,305	55.9
강 원	47,479	23,740	14,262	60.1
충 북	163,030	81,514	25,070	30.8
충 남	197,991	99,002	49,715	50.2
전 북	74,778	37,389	5,696	15.2
전 남	80,272	40,136	11,681	29.1
경 북	84,198	42,094	1,862	4.4
경 남	453,222	226,611	84,168	37.1
제 주*	43,558	21,779	9,337	42.9

* : 2015년 설립예정인 가칭 삼화1초 및 가칭 삼화중을 제외한 금액임

<표 20> 제주의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매입비 납부 현황 및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2013년 10월말 기준)

학교명	학교설립일	용지총비용	지자체분담금	부담액	미부담액
한라초	2001. 3.1.	17,859	8,929	2,232	6,697
한라중	2002. 3.1.				
백록초	2006. 3.1.				
탐라중	2011. 3.1.	8,389	4,194	4,194	0
이도초	2012. 3.1.	7,674	3,837	3,837	0
하귀일초	2002. 3.1.	2,611	1,306	1,306	0
가칭 삼2초	2014. 3.1.	7,026	3,513	3,513	0
가칭 삼1초	2015. 3.1.	7,016	3,508	0	3,508
가칭 삼화중	2015. 3.1.	8,120	4,060	0	4,060
합계	9교	58,695	29,347	15,082	14,265

4.3.2 학교설립기금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설립비용은 타 시도인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되지만 제주의 경우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학교설립비용을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결과, 학교설립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로 타 시도 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면서 교육부에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교부하던 학교신설 교부금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도시개발 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도립학교설립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2억 8,0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118억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61억 원이다.

<표 21>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2011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20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1,713,844	△15,606,935	17,869,591	33,476,526	26,106,909
감채기금	22,431,906	△22,431,906	6,044,620	28,476,526	0
도립학교 설립기금	19,281,938	6,824,971	11,824,971	5,000,000	26,106,909

4.4 특별 교육수요에 대한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

현 시도세 전입금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지만, 학교신설에 따른 특수 재정 수요, 학교용지구입 등 특별한 교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같은 성격의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용지매입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해야 할 교육예산 중 일부로서, 도세 및 지방교육세와 별도 항목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도교육청으로 이전시킬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협조 체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에는 지방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학교환경 개선 등의 소요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지원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에 대한 특수수요에 대처하고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같은 성격의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5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교육기관 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의 자치권한을 위해 예산권, 인사권의 일부를 돌려주기 위한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어 도세가 증액되어 법정전입금이 증가하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 창구가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측되었으나(백혜선외 4인, 2010), 자치단체장은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지원액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수가 늘어난 상황²⁾에서 교육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의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을 챙기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액수와 사례들이 많아진 결과로 사료된다.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었던 재원이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통합되면서 담배소비세의 일부가 교육기관으로의 전입이 없어진다. 자치단체장의 교육경비지원은 자치단체장의 선택적 의무상황(하봉운, 2006)이므로 좀 더 예측가능하게 하기위해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가

2) 7대에서 도의원이 29명이었는데, 8대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41명이 되었음

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교육재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2> 제주도의 교육경비보조 유치실적(자치단체·학교)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원학교수	130	125	141	102	152
지원액	3,971	5,880	6,579	7,956	12,983
증가액		1,909	701	1,190	5,027
증가율		48%	12%	18%	63%

자료: 백혜선의 4인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재판집

V. 결론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지방소비세) 보전, 내국세 수입 증가율의 둔화 등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의 결손액이 발생하거나 증가율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상급식,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 타도시와 차별화한 인재양성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첫째, 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국세의 20.27%의 1.57%를 법정률화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는데, 출생률 증가와 전입자 증가로 타 도시보다 누리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전출금과 다로 재정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교육청의 부담분이 확대되고, 2015년에는 교육청의 교특회계에서 100%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상향 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

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의 수준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비율이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총액의 25%를 추가로 5년간 교부하는 재정특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세종시 사례를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하는 특례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시도세 전입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뭍어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는 경기를 제외한 일반 도 단위와 같은 수준의 1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을 제주자치도 출범하기 전과 같이 1천분의 36으로 정한 도조례로 인해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을 감안할 경우 법정전출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제주특별법상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원 대폭 증원,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을 감안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원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시·군세가 자치도세로 전환되어 자치도세가 증액되어 법정전입금이 증가하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 창구가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측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지원액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에는 지방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학교환경 개선 등의 소요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 지원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비법정 기타전출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다면 제주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높여 제주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는 담배소비세액의 45%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도지역은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없다. 도지역에 담배소비세전입금이 없는 이유는 국세에서 지방세 전환시 특별시, 광역시지역과 도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에 기인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2시, 2군 행정계층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 출범하면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전출이 전혀 없다. 따라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었

던 재원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와 다른 행정체제로 인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제주도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되어야 한다. 담배소비세 전입대신 전입비율을 현 3.6%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인한 추가 전입도 없기 때문에 시도세 전입금만이라도 최소한 광역시 및 경기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미 도지역의 경우, 경기도는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특별교육수요에 대한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 시도세 전입금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지만, 학교용지구입 등 특별한 교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같은 성격의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설립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받아 내야 할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용지 비용을 충당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로 타 시도 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면서 교육부에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교부하던 학교신설 교부금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한 도립학교설립기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의 자치권한을 위해 예산권, 인사권의 일부를 돌려주기 위한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교육재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 결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회예산정책처 (2012),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및 향후 재정소요 등에 관한 연구」.
김동욱, (2013) “지방교부세, 제주계정 등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 지방재정학회 정책세미나, 2012, 11.
백혜선, 송금숙, 이순미, 고진, 박정환(2010)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연구, 제19권 제1호, 125-151.
안종석(2012), “지방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방향 재정포럼”, 재정포럼, 6-23.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재정고 (<http://lofin.mospa.go.kr>).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u.kr). 회의록.
하봉운(2006),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조례 제정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1), 225-246.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현명희(2010), “제주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상태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